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212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3/91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9. 2.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 1) C은 2002. 9.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3년경부터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 2) 주식회사 D은 2003. 9. 18.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2003. 12. 3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1. 4. 26. F유한회사에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F유한회사는 2019. 2. 22. 원고에게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소336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7,451,946원 및 그 중 1,399,946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9. 2. 25. 기준 6,858,408원[= 원금 1,399,946원 + 이자 5,458,462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73/18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G은 2019. 1. 29.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H, I, J(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 2) 위 상속인들은 2019. 2. 25.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2. 27. 접수 제4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와 C 사이의 친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¹⁾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3/182 지분이므로, 그 중 C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3/910 [= 173/182 \times 1/5]$ 이 된다.